| 안산대학교 |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| 규정번호 | 3-8-26 |
|---|---|---|---|
| | | 제정일자 | 1994.03.01. |
| | | 개정일자 | 2020.06.01. |
| | | 개정차수 | 3차 |
| | | 소관부서 | 교무입학처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입생 입학에 관하여 엄정을 기하고 우수한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입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
3. 원서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
4. 면접 및 신검에 관한 사항
5.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
6.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
7.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
8. 기타 입시전형 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, 교무입학처장, 각 학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입학처에서 담당한다.

제8조(의무)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, 본회의 내용 중 위원장이 지정한 기밀을 유지할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서기)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